



질병관리청

# 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

1. 관련:

- 가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-6(2024. 1. 5.)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10138(2023. 8. 30.)
- 다. 중앙방역대책본부-10260(2023. 9. 1.)

2. 귀 기관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(응급의료행위)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불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
- (질의요지)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가 '응급의료행위'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

불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. 끝.

중 앙 방 역 대 책 본 부 장



주무관	오준호	서기관	황영순	환자지침관리팀장	전결 01/12
					김정연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215 2024.01.12. 접수

우 28159 환자관리팀 / junsy5@korea.kr

전화 043-719-9379 전송 043-249- / junsy5@korea.kr / 공개
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